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55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이성권·김용태·이헌승

신성범・김 건・이달희

조은희 • 안상훈 • 김도읍

우재준 • 배준영 • 강명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·방재·방역·보건·측량· 감시·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•대비•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소방·"을 "소방을 포함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,"로, "한다"를 "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 ① (생	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	② <u>全</u>
<u>방ㆍ</u> 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	방을 포함한 「재난 및 안전관
감시・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	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
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	른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
하여야 <u>한다</u> .	<u>및 복구,</u>
	<u>하며, 이를 위하여 필</u>
	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
	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